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2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윤영석 · 조경태 · 박수영
구자근 · 박덕흠 · 최형두
유용원 · 김태호 · 임종득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

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자하고”를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를 “투자 및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를 “제1호의 투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1호와”를 “제1호 및”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u>100분의 3</u>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u>출자하고</u>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2033년 <u>12월 31일</u> ----- ----- ----- -----100분 <u>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u> <u>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추가</u> <u>로 적용한다)</u> ----- ----- ----- ----- ----- ----- -----

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1. 투자 및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2. 제1호의 투자를

3. 제1호 및 투자하는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
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
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생략)

③ · ④ (생략)

②

1.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사업이 종료된 경
우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